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'1995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강보건과 치아우식증(충치)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 진료는 비보험급여대상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'95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영등포구 조례로 진료수가를 정하여 대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

2. 주요골자

- 수수료 및 진료비중 구강보건과 진료비를 추가 신설(안 제2조)
- <별표> 수수료액중
6. 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 진료비(1회 2,750원)란 신설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 : 보건소법 제8조 제2항
- 예산조치 : 없 음
- 합의사항 : 없 음

4.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 : 별첨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구강보건과 진료비

<별표> 수수료액중 6. 구강보건과 진료비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구강보건과 진료비	가. 치면열구전색 진료비	1 회	2,750원	비보험 급여대상 진료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'95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진료비 산정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	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(생 략)</p> <p>② 1~5 (생 략)</p> <p>(신 설) 〈별표〉 수수료액</p>	<p>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1~5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구강보건과 진료비 〈별표〉 수수료액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2.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2.5%;">종류</th> <th style="width: 12.5%;">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12.5%;">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12.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-5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신설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종류	단위	금액	비고	1-5(생략)					(신설)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2.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2.5%;">종류</th> <th style="width: 12.5%;">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12.5%;">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12.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5">1-5(현행과같음)</td> </tr> <tr> <td>6. 구강보건과 진료비</td> <td>가. 치면열구전색 진료비</td> <td>1회</td> <td>2,750원</td> <td>비보험 급여대상 진료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'95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진료비 산정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종류	단위	금액	비고	1-5(현행과같음)					6. 구강보건과 진료비	가. 치면열구전색 진료비	1회	2,750원	비보험 급여대상 진료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'95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진료비 산정.
구분	종류	단위	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5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신설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종류	단위	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5(현행과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구강보건과 진료비	가. 치면열구전색 진료비	1회	2,750원	비보험 급여대상 진료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'95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진료비 산정.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6. 2. 6.
시민보사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5년 12월 1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1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1995년 2월 6일 제40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허숙조)

가. 제안이유

- 구강보건과 치아우식증(충치)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 진료는 비보험급여 대상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'95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영등포구 조례로 진료수가를 정하여 대 구민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수수료 및 진료비중 구강보건과 진료비를 추가 신설
- <별표> 수수료액중
- 6. 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 진료비(1회 2,750원)란을 신설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유재한)

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중 진료수가 기준액 표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95-9(1995. 2. 27)에 의거 개정 고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를 개정하여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소아 7세부터 11세까지에 해당하는 어린이에게 의료보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예방진료를 실시하여 구민 구강보건향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에 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 진료수수료를 신설하여 어린이 치아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진료비는 모두 진료를 받는 환자로부터 보건복지부고시로 규정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임.

본 조례의 개정은 법 위임 사항으로 제출된 안전과 상치되기 때문에 수수료 2,750원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고시로 규정하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修正案의 要旨

가. 수정이유

- 수수료가 인상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고시로 규정하는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함.

나. 수정주요골자

- <별표> 수수료액중 금액란 "2,750"을 "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 전액"으로 하고 비고란중 "95"를 "보건복지부고시"로 함.

5. 審査結果 : 수정안 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6. 2. 6

제안자 : 시민보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수수료가 인상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고시로 규정하는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<별표> 수수료액중 금액란 “2,750원”을 “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 전액”으로 하고 비교란중 “95”를 “보건복지부고시”로 함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<별표>중 수수료액중 금액란 “2,750원” “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 전액”으로 하고 비교란중 “95”를 “보건복지부고시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수 정 안	
<신설>	<신설>	2,750원	비보험급여대상 진료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'95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산정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u>보건소치과 1회 방문당수가 총진료비 전액</u> </div>	비보험급여대상 진료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<u>보건복지부고시</u> 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산정